

목 차

정 관	1
-----------	---

정 관

제정 : 1991년 1월 3일
제1차 개정 : 2000년 2월 19일
제2차 개정 : 2003년 3월 28일
제3차 개정 : 2003년 12월 17일
제4차 개정 : 2005년 3월 3일
제5차 개정 : 2005년 3월 31일
제6차 개정 : 2006년 3월 31일
제7차 개정 : 2007년 3월 30일
제8차 개정 : 2007년 6월 27일
제9차 개정 : 2007년 10월 30일
제10차 개정 : 2008년 2월 12일
제11차 개정 : 2008년 8월 22일
제12차 개정 : 2009년 3월 24일
제13차 개정 : 2010년 7월 2일
제14차 개정 : 2011년 3월 29일
제15차 개정 : 2011년 11월 7일
제16차 개정 : 2012년 3월 30일
제17차 개정 : 2013년 3월 15일
제18차 개정 : 2015년 2월 13일
제19차 개정 : 2015년 3월 31일
제20차 개정 : 2015년 10월 22일
제21차 개정 : 2016년 3월 25일
제22차 개정 : 2017년 3월 24일
제23차 개정 : 2018년 3월 26일
제24차 개정 : 2019년 3월 25일
제25차 개정 : 2021년 3월 22일
제26차 개정 : 2024년 3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AMPYO Cement Co., Ltd.라 표기한다.

<본조개정 2017. 3. 24.>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석유, 천연가스전 탐사, 개발, 생산, 판매사업 및 서비스 용역업
2. 국내외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판매사업 및 서비스용역
3.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입 및 수출업 대행업
4. 광물자원 수입 및 수입대행
5.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6. 부동산 매매 임대 및 편의 시설업
7.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분양사업
8. 투자중개 및 투자사업
9. 기업컨설팅 및 자문업
10. 자산관리 및 자금 운영, 관리대행업
11. 프로그램 개발, 판매사업 및 서비스용역업
12. 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중개 및 도소매 및 부대사업
13. 시멘트제품의 제조, 연구 및 개발업
14. 원자재, 부품 및 시멘트 완제품의 수입 및 수출업
15. 국내외에서의 시멘트제품의 마케팅, 판매 및 유통업
16. 광산 및 채석장의 개발 및 그로부터 획득하는 원료의 판매, 유통 및 제조업
17. 화물의 해상운송업
18. 하역업 및 화물취급업
19. 화물의 육상운송업
20. 운송대행업
21. 건축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22. 시멘트 유통관련사업
23. 부동산 임대업
24. 조립, 조정 및 관련사업
25. 시멘트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26. 광물성 생산품 및 이들의 원료에 관한 판매업,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에 관한 사업
27. 석유 및 석탄 저장 및 동 판매업에 관한 사업
28. 선박관리업 및 대여업에 관한 사업
29. 보관업에 관한 사업
30. 해운중개업에 관한 사업
31. 해외자원개발업 및 판매에 관한 사업
32. 하수·폐기물 등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3. 전기, 가스,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4. 생활용수 산업용수 공급업 등 수도사업
35. 연료 및 관련제품의 판매(고체, 액체, 기체)
36.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7. 사업시설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사업
38. 해외 시멘트사업,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컨설팅업
39. 레미콘·슬레이트·골재·역청콘크리트 및 기타 시멘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40. 국내외에서의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41.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2. 비료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43. 석유 코크스(petroleum cokes) 파우더 제조, 유통 및 판매업
44. 열에너지 생산 및 판매업
45.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판매업
46.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47.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용역업
48. 해외기술 수입 및 판매대행업
49.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50. 비금속원료 재생업

51. 선박안전관리대행업
52. 폐기물 수집운반업
53. 소각 등 폐기물 중간처분업
54. 매립 등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55. 폐합성수지, 폐자동차, 폐전자부품 가공, 처리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56. 토양, 지하수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환경관련 제반사업
57. 전 각호와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당 회사의 본점은 강원도 삼척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pyocemen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본조개정 2017. 3. 24.>

제 2 장 주 식 및 사 채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키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이 조에서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주로 한다.

②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전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⑧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0주로 한다.

②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상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개정 2019. 3. 25.>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당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본항개정 2015. 3. 31.>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본호삭제 2015. 3. 31.>

6. <본호삭제 2010. 7. 2.>

7. <본호삭제, 제1항 제2호로 변경 2015. 3. 31.>

8. <본호삭제 2015. 3. 31.>

9. <본호삭제, 제1항 제2호로 변경 2015. 3. 31.>

<본항개정 2015. 3. 31.>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5. 3. 31.>

④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5. 3. 31.>

⑤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5. 3. 31.>

⑥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5. 3. 31.>

⑦당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 3. 31.>

제10조의2 <본조삭제 2010. 7. 2.>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관계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의2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익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5 <본조삭제 2012. 3. 30.>

제11조<본조삭제 2010. 7. 2.>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본항개정 2019. 3. 25.>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본조삭제 2019. 3. 25.>

제13조의2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당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채의 발행) ①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 판매, 자본채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5,000억원은 보통 주식으로, 1,000억원은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 판매, 자본채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5,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억원은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신설 2019. 3. 25.>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8조 (소집시기) ①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으로 인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당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에 규정된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역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 3. 25.>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본조삭제 2016. 3. 25.>

제2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 사·위 원 회

제30조 (이사의 수) ①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한다.
②<본항개정 2007. 6. 27., 본항삭제 2010. 7. 2.>

제30조의2 <본조삭제 2008. 8. 22.>

제31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본항삭제 2008. 8. 22.>

제32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본항개정 2015. 10. 22., 2016. 3. 25.>
②<본항삭제 2010. 7. 2.>
③당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 (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의 최소 원수를 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본항삭제 2008. 8. 22.>
④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 등의 비등기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9. 3. 25.>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2 (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 3. 26.>

제35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8. 3. 26.>

제36조<조변변경 2000. 2. 19., 본조삭제 2010. 7. 2.>

제37조<조변변경 2000. 2. 19., 본조삭제 2010. 7. 2.>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 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당 회사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본조개정 2018. 3. 26.>

제40조의2 (위원회) ①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본항개정 2018. 3. 26.>

②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대표이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본조개정 2019. 3. 25.>

제 5 장 감 사 위 원 회

제42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 3. 22.>

⑤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1. 3. 22.>

⑥제4항, 제5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항개정 2021. 3. 22.>

⑦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 3. 22.>

⑧위 제7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본항신설 2021. 3. 22.>

⑨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1. 3. 22.>

제42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본항개정 2019. 3. 25.>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2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개정 2018. 3. 26.>

제 6 장 회 계

제43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 에서 정하는 서류

<본항개정 2018. 3. 26.>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3. 26.>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본항개정 2018. 3. 26.>

<삭제 2024. 3. 25.>

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4. 3. 25.>

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 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 삭제 2024. 3. 25.>

제4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5.>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본항삭제 2012. 3. 30.>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의2 (중간배당)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본항삭제 2006. 3. 31.>

③<본항삭제 2006. 3. 31.>

④<본항삭제 2006. 3. 31.>

제47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1991년 1월 3일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3년 3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5년 3월 3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5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6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7년 3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7년 6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8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8년 8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09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10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11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11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3항, 제10조의5, 제15조, 제15조의2 제3항, 제16조 제3항, 제35조의3, 제39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2015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주 발행한도와 관련하여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기발행한 주식의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15. 10. 22.) -

1.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임기만료 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부 칙(2016. 3. 25.) -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2015년 10월 22일자 부칙에 따라 2015년 10월 22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임기만료 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 부 칙(2017. 3. 24.) -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2018. 3. 26.) -

이 정관은 2018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2019. 3. 25.) -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증권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3. 22.)

이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2024. 3. 25.)

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